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4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9월 3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)

가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(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, 2008. 11. 5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인원을 조정(20명 이하→30명 이하)함. (안 제4조)
-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조정(20명 이하→30명 이하)함.(안 제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현재 위원 구성현황은?	○ 복지, 보건분야의 대표분들이 참여하고 있음.
○ 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하는 이유는?	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름. 8대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분들을 참여시킬 계획임.
○ 시의원 참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것은 어떠한가?	○ 법령에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검토하겠음.
○ 협의체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관심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?	○ 알겠음.
○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?	○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음.
○ 협의체 구성위원이 민간위탁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나, 위원확대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인사들로 구성해야 할 것임.	○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 (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)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조의4에 따라”로 한다.
제2조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”를 “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란 제3조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실무협의체”라 함은”을 ““실무협의체”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를 “10명 이상 30명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를 “10명 이상 30명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항각 호”를 “제2항 각 호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“전임자의 잔임기간”을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당해”을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·제2항·제4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하고, 제1항 중 “3분의 1이상”을 “3분의 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

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
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57호
의결 년월일	2009. 9. 8. (제154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8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(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, 2008. 11. 5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인원을 조정(20명 이하→30명 이하)함. (안 제4조)
- 나.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조정(20명 이하→30명 이하)함.(안 제5조)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조의4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”를 “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란 제3조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실무협의체”라 함은”을 ““실무협의체”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를 “10명 이상 30명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를 “10명 이상 30명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항각 호”를 “제2항 각 호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“전임자의 잔

임기간”을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당해”을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·제2항·제4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하고,
제1항 중 “3분의 1이상”을 “3분의 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
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
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<u>제1조의4의</u> <u>규정에 의하여</u>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제1조</u> <u>의4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라 함은 <u>제3조의</u> <u>규정에</u>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자문기구를 말한다.</p> <p>2. “실무협의체”라 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하부기구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뜻은 -----.</p> <p>1.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란 <u>제3</u> <u>조에</u> ----- -----.</p> <p>2. “실무협의체”란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 (기능) ① (생략)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<u>제12조의</u> <u>규정에 의한</u>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</p> <p>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<u>제2항</u> <u>의</u> <u>규정에</u> <u>의한</u>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.</p>	<p>제3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-----<u>제12조에</u> <u>따른</u> -----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제2항에</u> <u>따른</u>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장이 위촉하되,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
<p>③~⑤ (생략)</p>	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 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,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	<p>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-해당----- -----, 해당----- -----.</p>
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 (임기) 각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임기) ----- -----한 차례만----- -----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-----.</p>
<p>제8조 (해촉)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·질병·품위 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</p>	<p>제8조(해촉) ----- -----그 밖에----- -----해당-----.</p>
<p>제10조 (회의 등)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회의 등) ① ----- -----해당----- -----3분의 1 이상----- -----.</p>
<p>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</p>	<p>② -----해당----- -----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 (회의록) ① (생략). 1.~4. (생략) 5. 기타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 (의견의 청취)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(이하 “관계인등”이라 한다)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제16조 (회의수당)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등에게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④ ----- 해당 ----- ----- ----- .</p> <p>제11조(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. 1.~4. (현행과 같음) 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.</p> <p>제13조(의견의 청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 .</p> <p>제16조(회의수당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 (운영규칙) 이 조례에 규정 <u>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 <u>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